

예산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17,581,609	33,527,448
일반회계	1,045,661,810	31,369,854
특별회계	71,919,799	2,157,594
기타특별회계	71,919,799	2,157,594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477,599	134,328
수질개선특별회계	9,512,111	285,36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098,238	392,947
기반시설특별회계	470,760	14,12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02,210	3,06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40,248	64,20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13,911	207,417
주택사업특별회계	101,857	3,05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2,068,545	962,056
지하수특별회계	3,034,320	91,0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00,000천원으로 한다.